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 특성화 목표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과제 설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I.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

- 인권법률가, 인권변호사 양성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법률가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에 인권관련 교과목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와 함께 전반적인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
느냐가 향후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인권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 때문에, 인권법
률가로 성장하는 것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대학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제인 “인권”에 대한 의지가 향후 사법시험의 준비기관으로
위상의 변화가 올 경우,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따라서, 인권관련 교과목이 소외되지 않고 인권법률가의 양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안정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II.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교과목 구성)

1. 기본원칙

- 인권교과목 담당 교수는 인권의 전문성과 특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 가급적 인권교과목
전담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이 필요함
 - 단, 특정교과목의 경우 인력풀이 많지 않아 전임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문
적 기준보다는 인권실무 전문성을 존중하여 인권활동가 등 인권실무경력 인사를 채용
하여 인권과목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인권특성화와 관련하여 인권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 증진이 필요하
며, 이는 몇 개 인권과목을 학습한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3년간 전문대학원

전교육과정의 각 과목에서 인권내용이 통합 편성되어야 함

- 나아가서 인권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및 대학원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 일상에서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 필요

- 개설되는 각 과목은 국내 관련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등 국제적 결정문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인권특성화 관련 인권교과목이 개설되어 진행될 경우 가급적 인권교육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임
 -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자기권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 개설 인권과목

가. 기초분야(필수 및 선택)

- 대학교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소양지식을 획득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이 법학대학원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임
- 기초분야 인권과목 제안 : 기본권과 인권연구, 인권발전사, 인권보장제도론, 차별과 인권

교과목	내용
<p>기본권과 인권연구 (or 인권론연구)</p>	<p>인권 일반론으로서 기본권과 인권, 국가와 인권, 인권과 법,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수와 소수, 차이와 차별, 인권과 국제사회의 관계 등 학습 ※ “기본권과 인권연구” 강좌는 기존의 법대 대학원의 기본권론과의 차별성을 두고 포괄적으로 제시</p>
<p>인권발전사 (or 인권사상사, 인권역사연구)</p>	<p>인권에 대한 사상사적, 사건사적 측면의 역사적 이해를 돕는 과목으로서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인권관련 주요 사건변화, 시대별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학습</p>
<p>인권보장제도(체계)론 (or 인권제도론, 인권기구론)</p>	<p>국내 인권보장체계, 유엔 인권보장체계, 유럽 등 지역사회 및 해외국가 인권보장체계 등 학습과 비교 연구</p>
<p>차별과 인권</p>	<p>승인투쟁, 주체-타자화 등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차별금지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법적 흐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 ※ 사회적약자 인권연구(전문분야)의 기초과정으로 개설</p>

나. 전문분야(필수 및 선택)

- 세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권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권현안 문제를 보편적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인권문제를 구체화하여 세분화된 과목 편성 필요
- 우리 사회 법률시장에서 상품성을 갖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인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과목편성 필요

- 전문분야 인권과목 제안 : 사회적 약자 인권 연구, 국제인권법 연구, 사회권 연구, 현대 과학과 인권 연구, 형사절차와 인권 연구

교과목	내용
<p>사회적 약자 인권 연구</p>	<p>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장애인, 여성, 아동,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국내법 체계, 관련 국내외 결정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p> <p>※ 사회적 약자 과목을 세분화할 경우(선택과목으로 운영 가능)</p> <p>1. <u>성차별과 인권 연구</u> 고용평등,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 이와 관련된 국제법 및 국내법 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p> <p>2. <u>장애차별과 인권 연구</u> 장애인(유형별)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장애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 장애차별금지법, 장애관련 복지법 등 국내 법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정신장애인 등의 문제 포함</p> <p>3. <u>아동인권 연구</u> 아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체계 및 결정사례 등에 대한 비교 연구, 교육권문제 포함</p> <p>4. <u>외국인 인권 연구</u>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화교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체계 및 결정사례 등에 대한 비교 연구, 외국인의 투자 등 소유권 문제 등 포함</p>

교과목	내용
국제인권법 연구	유엔의 7대 협약 및 유럽인권법 등에 대한 연구, 지역별 인권 보장체계(유럽, 미주, 아프리카), 국제분쟁 및 내전 상황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국제적 대응 등에 대한 연구, Humanitarian law(Geneve conventions), 유엔의 1503절차, 개인통보제도, ICC 등에 대한 연구
사회권 연구	교육권, 보건의료제도와 건강권, 환자인권, 주거권(개발문제), 복지권, 환경권, 문화권 등 관련 국내의 법령체계 및 결정례에 대한 연구 ※ 사회권 중 환경문제, 의료문제, 복지시설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시장 수요가 예측됨으로 별도 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u>1. 노동과 인권</u> <u>2. 환경과 인권</u> <u>3. 의료와 인권</u> <u>4. 사회복지시설과 인권</u>
현대과학과 인권 연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 즉, 생명윤리, 정보인권, 지적재산권 등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국내의 법령 및 결정사례에 대한 학습
형사절차와 인권 연구	경찰, 검찰,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 체계, 관련 국내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다. 지역사회 특화 분야

- 대구·경북지역의 유교적 전통을 살리면서 지역사회 고유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한 인권 교과목 편성 필요
- 지역사회 특화 분야 인권과목 제안 : 전통적 가치와 인권연구, 경제와 인권연구,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인권연구

교과목	내용
전통적 가치와 인권 연구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보편적 인권과 아시아적 가치의 논쟁, 유교에 나타난 인권해석, 한국역사의 인권사건 등에 대한 학습
경제와 인권 연구 (or 지역경제와 인권, 지역발전과 인권)	기업의 고용차별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등 인권문제, 농어촌지역 인권문제, 노동자 인권문제 등에 사회과학적 인식과 관련 국내의 법령 체계 및 결정례에 대한 학습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인권 연구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 다수인보호시설 인권 등과 함께 환경 및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권의 문제(혐오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현장체험

Ⅲ. 인력에 대한 제안

- 특성화에 따른 교과목 개설시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강사인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 운영 방식
 - 전임교수 확보
 - 겸임교수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 또는 직원 중 인권에 대한 실무경력과 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겸임교수로 섭외 제안
 - 팀 티칭 :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구제 및 차별시정 등의 업무 또는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사례를 통하여 인권의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에서 해당 업무에 정통한 위원회 직원 Pool을 구축하여 강사인력으로 활용 가능할 것임

IV. 인권실무 수습 관련 세부협약 체결

○ 인턴쉽 프로그램 개요

-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학생의 인권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학교류프로그램 운영
- 대상 : 2학년 학생 36명(18명 2개조로 병렬 또는 순차적 운영)
- 기간 : 여름방학 기간 4주 프로그램
- 내용 : 인권정책, 진정사건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국제인권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및 결정례에 대한 학습과 실무경험 등을 통하여 3학기 동안 정규 수업에서 습득한 인권관련 지식을 체화하고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인턴쉽 프로그램 기본사항

- 기본전제
 - 제약요인 : 위원회 각 부서의 업무부담 및 공간·물품 등의 제약을 감안하여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운영단위 : 실무경험(상담, 면진진정 등)을 제외하고는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예산사항 : 영남대학교에서 숙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예산을 부담하며, 업무상 출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지급 가능
- 인턴쉽 프로그램 체계(예시)
 - 1주차 : 국가인권위원회 및 주요 기능별 업무 소개 등
 - 2주차 : 주요 결정례 논의, 특강 등
 - 3~4주차 : 상담업무 지원 및 면진진정 동행, 검토보고서 작성 등
 - ※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 일정에 따라 참관 프로그램 도입
 - ※ 세부 프로그램은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검토 및 확정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쉽 프로그램의 사전 필수사항

-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사전 경험 필요(법무부, 경찰청 등)

○ 세부협약의 체결

- 세부협약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문안 확정
- 세부협약 체결 : 10월 4주 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결 추진
- 체결주체 : 양 기관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인권교육본부장과 법과대학장 사이에 체결
-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붙임 > 인권실무 수습을 위한 세부협약서(안)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실무수습(Externship)을 위한 세부협약서(안)

제1조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교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 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인권실무수습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실무수습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교는 ○○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생의 인권실무수습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인권실무수습은 연간 ○○명 이내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실무수습 운영기간 및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실무수습 실시 전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실무수습 기준 시간,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와 학생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규정에 의한다.
4. 경비는 ○○대학교에서 부담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인권현장 실무교육 인력 지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육과정에 인권현장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효력】 이 세부협약은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세부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 10 . .

인권교육본부장

법과대학장
